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 - 0941/7)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산 CTV 관세인하

EC 집행위는 한국산 소형 CTV에 부과중인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적 재심을 개시하였다. 덤핑조사 당시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업체의 덤핑마진률은 10.2%~10.5% 수준이나 기타 업체의 경우 19.6%의 Residual Duty(잔여관세)를 부과받아 왔다. 동 재심은 잔여관세의 존재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다.

2. 홍콩, 중국산 소형 TV 반덤핑 관세부과

EC 집행위는 홍콩 및 중국산 소형컬러 TV에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였다. EC산업의 피해산정은 이들 두나라의 1988년 EC 시장점유율이 16.88%에 달하며, 결과적으로 1985년 69%이던 EC 생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1988년에 39%로 떨어졌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기간(특히 1988년)중에 EC산업은 재정손실을 겪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대만산 TV 수입품에 대해서는 동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이들 제품들의 다수가 EC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C 집행위는 만약 EC 산업이 소형 TV시장에서 제외된다면 대형TV나 VCR 그리고 전자부품 등 여타의 부분에서도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중국을 여러가지 가격인상 조건(Price Unde

rtaking)을 제시했었으나 사후 감시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기각되었다.

3. 일본산 감열지(Thermal Paper) A/D 조사개시

EC 집행위는 Wiggins Teape Thermal Papers Limited社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본산 감열지(CN Code ex 4810 11 9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몇몇 회원국에서 동 제품은 CN Code ex 3703 9090으로 분류되기도 함).

4. EC, 일본산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A/D 관세부과

EC 집행위는 일본산 Tungsten hologen lamp에 대해 1990년 7월 예비판정에 이어 이번 확정판정을 내렸다. 일본의 Phoenix Electronic社와 Iwasaki Electric社에 대해 각각 4.55% 및 35.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Residual Duty로서 46.5%를 부과했다.

5. 프랑스, 한국산 CTV 및 Radio 간접수입 금지

EC집행위는 EC 조약 115조(Article 115 of the EEC Treaty)에 의거, 프랑스에게 한국산 CTV 및 Radio에 대해 각각 42,000대 및 434,

000대의 간접 수입 쿼터를 승인했다. 동 조치는 1991년 6월 30일까지이다.

6. Article 115 가이드라인

Article 115는 집행위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EC내에 자유 유통되는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으로 1992년 단일시장 목표와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처음으로 115조 적용의 점진적 제한에 관해 구체적인 표명을 했으며 가전제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해 동 115조에 제제를 받게 된다.

회원국	품 목	수출국
스페인	재봉틀	브라질, 대만, 일본
프랑스	라디오 CTV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대만

회원국들은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7. 미·일 반도체 협정

도쿄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과 관련하여 도쿄협정에 참석한 미국 무역대표들은 9월로 만료되는 미·일 쌍무 협정의 5개년 추가 연장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협정의 주요 목적은 일본 칩 시장의 대외 개방이다.

미국의 SIA (반도체 산업협회)는 일본이 자국시장 수요량의 20%선까지 칩 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의 실행 상황에 대해 완전히 만족치 못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수정을 원하고 있다.

한편 SIA 자료에 의하면 일본 칩 시장에 대한 외국산의 시장점유율은 1989년 11.5%에서 1990년 상반기중 12.5%로 상승했다.

8. GATT

EC와 미국은 작년말 우루과이 라운드 실패의 원인이된 농산물 분야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관리들의 워싱턴 회합에서, EC는 농산물 수입 보조금의 양적 규제 및 해외 수입품의 최소량보증(Guaranteed Minimum)에 대한 역할 등을 再考할 것에 동의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것들은 약속기한인 1991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통령 의향서가 필요로 되는 이에 대해 미국은 2년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의향서(Presidential Statement of Intent)가 필요하게 된다.

9. Computer 프로그램 보호법

EC 이사회(Council)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지침초안에 대한 일반 입장을 결정지었다. 현재 2차 검토를 위해 유럽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동지침(Directive)의 기본원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는 몇몇 예외규정이 있는데, 프로그램 상호간 데이터 교환을 요하는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의 "Reverse Engineering"이나 "Decompilation"을 허용하는 규정 등이다.

10. EEA(European Economic Area)

EFTA 6개국은 EEA(유럽 경제구역) 창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무역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EC 집행위의 협상 관계자들이 언급했다. EEA는 정보보조와 경쟁정책 등을 위한 기구 및 일반규정 설정을 포함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협상 관련자들은 대외관세의 완전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치는 않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덤핌, 특혜, 쿼타 등과 관련, 지속적인 무역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문제 영역으로 보고 있다.

EFTA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EC 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관세 단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

11. EMU

EC 각국 정부대표들은 최근 회원국간 경제, 통화동맹(Economic & Monetary Union)에 관해 토의코져 정부간 협의회 개최식을 소집했다. 본 협의회는 1990년 10월 30일 로마 유럽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단일 시장의 최종 목표로서 단일 통화제도 설립안에 동의를 했다. 이 협의회는 EC 집행위의 제안을 실무안으로 채택하여 회원국 대표들에게 수정안이나 대체안 등을 제의토록 했다.

예상했던대로, 영국은 당분간 단일 화폐와 단일 통화정책 결정을 유보시켰으나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동 협회에 적극 참여할 의향과 2단계 통화동맹의 향방에 대해 동의했다.

12. ITC, "Plastic Encapsulated Integrated Circuits" Case 검토않기로 결정

ITC(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행정심판관이 "복잡한" Case로 판정한 Plastic Encapsulated IC Case를 검토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최종 예비판정의 시한은 '91년 5월 15일에서 5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조사종료 시한은 6개월 연장되어 '91년 8월 15일에서 '92년 2월 15까지가 될 예정이다.

13. 반도체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대표, 경쟁력 제고 정책 촉구

반도체, 통신장비, 의약 및 생물공학 업계대표들은 1월 17일 ITC의 특정산업의 국제 경쟁력 조사에서 증언, ITC는 앞서고 있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방해하는 현재의 혹은 거론되고 있는 미국이나 외국·정부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발표할 것이다.

14. "수퍼 301조" 연장 법안 상정

하원 세일세출 위원회의 샌더 레빈 의원(민-미시간)은 수퍼 301조의 소생과 강화 위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레빈의 "1991년 공정무역과 수출확대법"은 "수퍼 301조의 아들"이라고 와싱턴에서 불리워진다.

레빈의 법안은 대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대외 무역 평가 보고서(NTE)에 포함되고 쌍무교역에서 미국의 전체 대외 무역적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을 "우선 협상대상국(PFC)"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또한 최소한 5%의 부문별 무역적자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무역장벽도 우선 협상관행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주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논의중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레빈의 법안은 최근의 수퍼 301조 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상 완료시한을 규정할 것이나 우선 협상 관행을 협정 실패로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내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해결안도 제시되지 않을시 보복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또한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국의 손실에 해당하는 "괄목할만한" 제재조치의 시행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밝혀진 무역장벽과 관행이 3

년내에 제거될 경우 어느정도의 미국 수출의 증대가 있을지 추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레빈과 자동차 생산업체가 있는 주 출신 의원들은 '88년 통상법내의 통신, 지적 소유권 조항과 유사한 자동차 부문을 위한 특정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15. 쌍무 한·미 통상관계 Update

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 회의는 한국의 통상팀의 교체후 첫번째 회담이었다. 한국은 원만한 한·미 통상관계의 복원을 희망하였고 UR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 통상 실무 협상에 참석했던 관리들은 회의적 반응이었으나 미 언론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 봉서 신임 상공장관의 기용은 긍정적인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미국 관리들은 1월의 통상 실무 협상에서 UR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한국 대표들은 15개 전 협상그룹에 걸쳐 타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시사하였고 농산물에 관한 심각한 견해차는 상당히 해소된 것 같다. 쌍무 현안에 관하여 12월과 1월의 실무회담에서 담배, 포도주, 쇠고기, 지적 소유권 등 모든 미해결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아 있는 문제들로는
- 의료기 및 식품의 수입을 막는 위생, 안전 규정
- 유사한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의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
-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적 소유권 보호 부문의 제반문제
 - 한국은 제품의 수와 금액면에서 세계 2위의 모조품 수출국
 - 한국에는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없음. (다이아몬드 생산 위한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하여 일진과 GE社의 분류는 아직 미해결 상태임)

○한국은 반도체 마스크 워크법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실무관리는 한국의 통상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한번한 약속이 한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주 바뀐다고 불평한다. 한국이 자유 무역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는 단지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관리는 수입금지를 위하여 모든 종류의 비관세 장벽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담배, 금융, 과일, 야채 등 민감한 부문에서 이전에 약속한 사항들을 준수치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은 시장개방에 역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특히 미국 업계를 성나게 한다.

한국의 새로운 통상팀하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된다해도, 부정적 관념과 냉소주의가 극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비관세 장벽의 많은 부문이 위생, 안전요건, 표준, 서비스시장, 농산물 등 상공부 이외의 부서의 관련사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상팀의 변경은 이러한 문제에 최소한의 효과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6. USTR, 차별적 정부 구매 관행 연례 조사 시작

'88년 무역법 305조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 구매시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외국의 차별적 관행의 정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고서는 '91년 4월 1일까지 발표되어야 한다.

USTR은 GATT 정부 구매조항의 준수나 차별적 관행의 철폐를 위하여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들과 협의해야만 한다. GATT 조항과 연관된 조항이나 관행의 경우, GATT의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 시작 1년내에 외국의 준수 노력이 성공치 못할 경우, 미국은 Buy-America 금지조항의 유보를 통하여 해당국가의 미국정부 구매 참여를 금지시킬 수 있다.

GATT 정부 구매 코드로 커버할 수 없는 국가와 관행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대의회 보고서 발송후 60일내에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보고서는 아래 국가들을 규명해야 한다.

-GATT 정부 구매 협정 서명국으로서 본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국가

-GATT 정부 구매 협정 서명국으로서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GATT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정부 구매에서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적인 국가

-GATT 협정 비서명국으로서 정부구매에서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적인 국가 '90년에는 어느 국가도 협의 대상 국가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USTR은 하기 7개 국가의 정부 구매 시장이 특히 미국산업에 이해가 깊다고 발표했다. EC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이다.

의회의 관심에 호응, 대만에 대한 참고자료가 또한 제공되었다. 작년도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이 GATT 정부 구매 협정 가입과 관련하여 주요 정부 조달부서의 통신품 구매 계약을 포함시키는데 합의했음을 언급하였다. 그 당시 한국 정부 구매 관행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외국 구매와 대응 구매보다는 국내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있다는 GATT 정부 구매 조항의 강화를 위한 협의가 UR 회의를 병행하여 있을 것이나 '91년 4월 1일 보고서 시한까지는 회의 종료가 어려울 것이다. USTR은 '91년 3월 8일 송부될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USTR이 검토 요청하는 자료는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차별 조치 상황

-차별적으로 보는 정책, 관행

-GATT 코드 미 준수가 미국 공급업체의 외국 구매 참여능력을 저해하는 정도

1991년 4월 30일까지 USTR은 지적 소유권 문제에 관한 "스페셜 301조 조사"에 해당될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국"의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협상 대상국은 지적 소유권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적 소유권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인 또는 업체들에 대해 공정하고도 공평한 시장 접근 기회를 부인하는 국가이다.

USTR은 1988년 종합 무역법에 따라 "스페셜 301조" 조사를 아직 개시하지는 않았다. 1989년 5월 첫번째 결정에서 USTR은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을 촉진시키고자 25개 "우선 감시대상국" 및 "감시 대상국"을 선정했다.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는 한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대만, 태국이 선정되었었다. "감시 대상국"으로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베네즈엘라, 유고 등이 있다.

1990년 4월, USTR은 한국, 폴란드, 체코,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콜롬비아, 칠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유고 등이 지적 소유권 보호 또는 법 시행을 강화한 국가로 보고한바 있다. 멕시코와 포르투갈은 우선 감시 대상국과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남아있다.

쌍무간 관계에 관한 Update에서 보고하였듯이, 한·미국간에는 여러 IPR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은 또한 UR의 IPR 협상에서 여러 현안문제에 관해 한국이 취한 입장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은 또한 GATT 협정내에서 반도체 마스크 워크 보호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의 이같은 접근방법은 부적절한 것이며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17. 1991년 스페셜 301조 조사